

특수건물 유형별 화재 조사

채 수 주

(본 협회 위험관리부 과장)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팔복동 1가 338-1
- 화재일시 : 1988년 12월 4일 09시 07분(일요일)
- 화재원인 : 미 상
- 재산피해 : 2억6천9백만원(건물, 기계)

이 업체는 내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국내 굴지의 회사로서 사고가 난 전주공장은 총 18개 건물 연면적 8만4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사를 구입하여 편직, 염색가공을 하고있다.

개략적인 생산공정은 <공정도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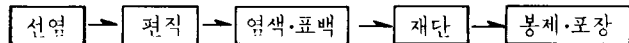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1층, 지상8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서 연면적은 3만5천3백32㎡이며 염색, 건조, 편직작업장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는 순찰근무중이던 경비원에 의해 최초로 목격되었다. 2층 선염사 건조실(선염 : 원사 염색공정)에서 창문으로 연기가 솟아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소방서에 신고하는 한편, 소화기와 소화전 등을 사용해 당일 근무중이던 직원들과 합세하여 자체진화를 시도하였으나, 건조실옆에 위치한 창고내에 수용된 원사 및 원단이 타

면서 내뿜는 화염 및 유독가스 때문에 현장 접근이 어려웠다. 불은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소방대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회사에 나온 종업원들에 의하여 화재발생 3시간이 지난 12시 45분경 완전진화되었다. 이 불로 2층(4천3백38㎡)이 완전 소실되었고 3층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사고당일은 휴무인 일요일이었

<공정도 1>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89
- 화재일시 : 1989년 2월 24일 04시 25분(금요일)
- 화재원인 : 전기(추정)
- 재산피해 : 5천만원(건물)

본 건물은 영등포 로타리의 예식장과 피로연회장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이 건물은 1969년에 의원용도로 건축되었으나 1978년에 이웃건물의 신축과 더불어 5층으로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천7백89㎡로서 지하층 및 1,2층은 음식점으로 임대사용되고 있으며 3~5층은 의원용도였으나 화재당시에는 사용치 않고 방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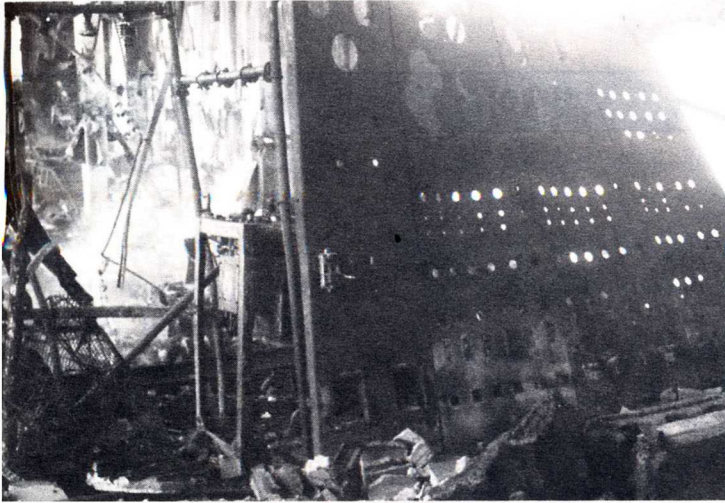
고 2층 건조실의 전날 야간근무자(6명)도 08시경에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한편 관계당국에서 화재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화재가 난 8층 건물은 건물과 기계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57억원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액 전액이 보상되었다.

상태였다.

화재는 04시 30분경에 길을 지나던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인근 주민에게 알립과 동시에 소방서에 신고하였다. 소방서가 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긴급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층을 태우고 진화되었으며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2명)도 무사히 구조되었다.

영업시간이 오랜시간 경과한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1층 발화 지점에는 화기사용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전기로 추정하였다. 1층의 내장재, 집기비품 등이 전소된 상태이며 지하층 2~5층은 매연에 의하여 심하게 그을리거나 수손피해를 당했다.



- 소재지 : 대구직할시 북구 노원3가 196-1
- 화재일시 : 1989년 1월 29일 20시 35분(일요일)
- 화재원인 : 전기난로 취급부주의
- 재산피해 : 8천3백만원(건물, 기계)

본 공장은 유리구, 베이스, 유리관, 필라멘트 등을 구입, 이를 조립하여 백열전구를 생산하고 있는 중업원 1백명 정도의 중소기업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동은 철근콘크리트 슬래이트 구조의 2층 건물로 1층(1천3백31㎡)은 작업장 및 창고 용도로, 2층(3백76㎡)은 시험실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작업장의 생산공정은 <공정도2>와 같다.

화재는 1층 포장작업장에서 발생하였다. 사고당일은 일요일이었으나 밀린 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

(공정도 2)



장 작업장 중업원이 17:00경에 출근하여 전기난로를 켜놓고 작업을 하던중 20시 20분쯤 잠깐동안 작업장을 비운 사이에 발생하였다. 작업장에 되돌아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수위실에 연락하였다. 경비원은 즉시 199에 신고하는 한편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업원 10여명과 진화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건물안에 저장되었던 포장재료가 타면서 내뿜는 화염 등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였다. 자재 및 제품창고로 확산된 불은 긴급 출동한 소방대에 의하여 발생 약 1시간 만에 완전 진화되었다.

이 화재로 2층 공장건물의 70% 정도가 소실되었으며 건물내에 사용되었던 기계 및 동산이 소손피해를 당했다. 이 공장은 3억4천만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7천6백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95
- 화재일시 : 1988년 2월 28일 11시 52분(화요일)
- 화재원인 : 어린이 불장난
- 재산피해 : 1천5백만원(건물)

14개동 총9백3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12층 건물로서 화재가 발생한 216동은 39평형으로 72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화재는 1001호의 거실에서 11시 52분에 발생하였다.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어린이 2명(남자 7세, 5세)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휴지와 라이터를 가지고 쇼파에 앉아 불장난을 하다 쇼파에 불이 붙어 발생하였다. 불이 난 것을 안 형이 거실벽에 붙어 있는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신고하였다. 발생한 불은 거실에 있는 가재도구를 태우면서 건물내부로 확대되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비원은 관리사무소 및 동료직원에게 연락하고 화재현장으로 달려가 소화전으로 진화작업을 하였다.

화재당시 1001호 안에 있었던 어린이 2명은 밖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 불로 1001호 내부가 대부분 소실되었고 1101호, 1201호도 일부 오손되었다.

아파트화재의 발생원인은 전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불장난이다. 불장난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냥, 라이터, 양초 등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해야하며 이런 물건은 어린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평소 교양 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